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0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78601 납세의무자변경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6. 3. 25.
판 결 선 고	2016. 4. 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8. 7. 원고에 대하여 한 납세의무자변경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6. 29. 소외 B 소유의 [redacted]구 C 제지하층 제1호(이하 '이 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0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7. 6. 8.자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취득세 33,999,870원, 농어촌특별세 3,399,980원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신고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2007. 9. 10. 원고에게 취득세 34,428,260원, 농어촌특별세 3,442,810원(각 가산세 포함)을 납세고지하였다(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하고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7. 17. 피고에게, 자신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실제 소유자는 소외 D이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2008. 7. 2. 소외 E에게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과되었던 양도소득세에 대한 고충처리신청 결과 안양세무서에서 2015. 6. 19.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해서도 납세의무자를 D으로 변경하고, 원고가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8. 7. 원고에게, "원고는 2007. 6. 29. 교환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는 내용으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회신문(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0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D이 실제 소유자이고, 원고는 3자간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며, 2015. 5. 21. [redacted]세무서에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하여 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 이와 같이 명의신탁관계가 증명되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위 등을 고려해보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를 위 D으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고,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인 D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회신은 위법한 거부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서 원고에게 권리를 부여 또는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고, 원고에게 납세의무자변경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도 그 신청에 따르는 내용의 행위를 함이 없이 신청서를 반려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 또는 위법한 부작위가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법규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0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두10936 판결 등 참조). 또한 세법에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납부의무자의 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3두7651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납세의무자를 D으로 변경하고, 원고가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이 사건 신청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라고 할 것인바, ① 일반적으로 당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절차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아야 하고, 당해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처분청이나 취소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청(이하 "처분청 등"이라 한다)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이는 처분청 등의 직권에 의한 것이지 이해관계인이 처분청 등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거나 처분청 등이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인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②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위와 같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절차 이외에도 제71조, 제72조 내지 제79조에서 수정신고,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해 정해진 기간(수정신고 60일,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90일) 이내에 신청을 하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0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이의신청 등의 구제절차를 거친 사실이 전혀 없는바, 이러한 경우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더 이상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신청권을 인정하는 것은 위와 같은 불가쟁력에 정면으로 반하는 점, ④ 원고는 지방세기본법이나 지방세법에서 납세의무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37조, 제38조, 제58조 등을 근거로 납세의무자변경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실질과세의 원칙 또는 과세관청이 징수금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납부의무가 소멸한다는 내용의 위 규정만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규정을 근거로 무기한의 경정신청권을 인정하게 되면 확정된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납세의무자가 언제든지 다툴 수 있게 되어 조세법률관계가 극히 불안정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과 같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이 사건 회신에 대한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

5.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0

재판장 판사 김병수

판사 유성욱

판사 장인혜